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해 군 항 공 사 령 부 령 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광해역에 대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해상항공부대의 효율적인 통제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군에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군항공사령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해군항공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관 등의 직무, 참모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정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해군항공사령부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 항공사령부의 작전·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한다.

② 항공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항공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항공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를 유지·단속한다.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

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00000호, 2000.00.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제2조(관할구역) ① 항공사령부의 작전·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한다. ② 항공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항공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항공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신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를 유지·단속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